

1995. 7. .

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회운영위원회

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. 7. 22. 충주시의회의장

나. 회부일자 : 1995. 7. 22.

다. 상정일자 : 제 1차 위원회(1995. 7. 25.) - 상정, 질의.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의정계장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등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,회의수당,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신설 : 월 350,000원
- 의원의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개정
- 의원이 회기중 실제로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개정
- 의원의 의회 출무여비 지급규정 삭제

3. 전문위원검토보고

" 생 략 "

4. 질의.답변요지

- 질의요지 :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월 350,000원의 산출근거는 ?
- 답변요지 :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없으며, 추후 내무부에 질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붙임

-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

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(이하 '의회'라 한다)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의수당,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- 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- 제3조(회의수당 지급) 의원이 회기중 회의(이하 '본회의'라 한다) 또는 위원회(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)에 실제 출석한 경우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지 조사활동등에 참석한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
- 제4조(여비지급)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- 제5조(여비의 종류)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자동차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
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(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제6조 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0,000원으로 하고,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7조 (회의수당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회의 출석일수 1일에 50,000원으로 한다.

제8조 (여비 지급기준) ①국내여비는 『별표 1』의 '국내여비 지급 기준표'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국외여비는 『별표 2』의 '국외여비지급기준표'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9조 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『별표 1』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

제10조 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'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
[별 표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 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분 | 철도 운임 | 선박 운임 | 항공 운임 | 자동차 운임 | 현지 교통비 (1일당) | 숙박비 (1야당) | 식비 (1일당)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장의 부장 | 1 등급 | 2 등급 | 정액 | 정액 | 6,500 | 20,700 | 11,000 |
| 의원 | 2 등급 | 2 등급 | 정액 | 정액 | 6,500 | 16,200 | 10,500 |

- 비고 : 1. 의회 소재지 내에서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.
2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3. 철도요금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4.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등정액을 지급하며, 운임의 요금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[별표 2]

국외여비지급기준표 (제8조 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| 구 분 | 항공임 | 등급 | 일비 | 숙박비 | 식비 | 준 비 금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 15일미만 | 15~30일 | 30일이상 |
| 의 장 부의장 | 1 등 정액 | 가 | 25 | 130 | 107 | 140 | 170 | 195 |
| | | 나 | 25 | 90 | 78 | | | |
| | | 다 | 25 | 72 | 58 | | | |
| | | 라 | 25 | 62 | 49 | | | |
| 의 원 | 2 등 정액 | 가 | 20 | 114 | 81 | 130 | 155 | 180 |
| | | 나 | 20 | 74 | 59 | | | |
| | | 다 | 20 | 55 | 44 | | | |
| | | 라 | 20 | 46 | 37 | | | |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등급 : 뉴욕, 런던, 파리, 스톡홀름, 동경, 홍콩

나. 나등급

(1) 아세아주. 대양주 : 일본, 파푸아뉴기니아

(2) 남. 북아메리카주 : 워싱턴, 로스앤젤레스, 샌프란시스코, 트리니다드토바고, 자메이카

(3) 유럽주 : 영구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스위스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

- (4) 중동. 아프리카주 :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가봉, 중앙 아프리카, 카메루온, 우간다, 코트디브와르, 니제르, 자이르, 수단

다. 다등급

- (1) 아세아주. 대양주 : 인도, 터어키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필리핀, 타이, 중화민국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
- (2) 남. 북아메리카주 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아이티, 바베이도스, 브라질, 칠레, 수리남
- (3) 유럽주 : 덴마크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회랍
- (4) 중동. 아프리카주 : 요르단, 바레인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이라크, 리비아, 이집트, 케냐, 나이지리아, 세네갈, 라이베리아, 모리타니아, 시에라리온, 이디오피아, 부르키나파소, 모리시어스

라. 라등급

- (1) 아세아주. 대양주 : 인도네시아, , 버어마, 스리랑카, 휘지, 네팔
- (2) 남. 북아메리카주 : 구아테말라, 엘살바도로, 도미니카공화국, 콜롬비아, 베네수엘라, 에쿠아도르, 페루, 볼리비아, 우르구아이, 아르헨티나
- (3) 유럽주 : 해당국가 없음
- (4) 중동. 아프리카주 : 레바논, 북예멘, 모로코, 튀니지, 루안다, 말라위, 스와지랜드, 가나, 소말리아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